

안산도시관리계획(변경)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

의안 번호	116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3. 9.

제출자 : 안산시장

1. 제안사유

- 우리시 선부동 지역은 공동주택등의 건립에 따른 인구집중으로 교통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외곽도로와의 진·출입도로가 없어 우회하여야 하는 등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
- 외곽순환도로와 선부동을 연계한 입체교차로 설치로 지역주민의 교통편익을 제공하고 교통량 분산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(광장, 공원) 변경 결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광장 결정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치	면적(m ²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-	광장	교통 광장	단원구 선부동 476번지 일원	-	(증) 23,917	23,917	-	

나. 공원 결정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공원명	시설의 세분	위치	면적(m ²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-	와동 제1공원	근린 공원	단원구 와동 787번지 일원	88,708	(감) 4,390	84,318	'01.4.13	

3. 검토의견

- 외곽순환도로와 선부동을 연계한 입체교차로 설치로 지역주민의 교통 편익을 제공하고 교통량을 분산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
- 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법 등에 적합 하므로 동 안건과 같이 변경 결정되어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4. 관계법령 발췌내용
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제28조(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) ① 건설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,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

덧붙임 : 의회 의견청취의 건 설명자료 1부 끝